

의안검토보고서

1. 발의 또는 제출자 : 대전광역시장
2. 건 명 : 대전광역시도시개발공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안 건 요 지 : 별 첨
4. 검 토 의 건 : 별 첨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별첨과 같이 보고합니다.

2009년 3월 12일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박춘용

대전광역시도시개발공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본 조례 안은 2009년 2월 23일 대전광역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9년 2월 24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대전광역시도시개발공사의 명칭을 친환경·미래지향적 이미지를
내포할 수 있도록 대전도시공사로 변경하고, 공사의 사업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공사의 명칭을 변경함(안 제1조).
- 나. 공사의 사업을 일부 조정함(안 제19조).

3.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 안은

공사명칭을 단순화 하고 친환경·미래 지향적 공사 이미지 정립을
위하여 「대전광역시도시개발공사」에서 「대전도시공사」로
명칭을 변경하고

법제처유권해석에 의한 금강유역환경관리청의 건설폐재파쇄장
폐쇄결정 조치에 따라 건설자재 생산 및 판매 사업을 삭제하며,

미 추진 도시가스사업 삭제 및 정확한 용어사용 등을 위하여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

부칙에서 경과조치 및 공사명칭 개정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 본 개정 조례 안 검토결과

공사명칭 변경을 통하여 미래지향적인 이미지 홍보효과 향상을
기대할 수 있으며

공사 현실에 맞도록 시행사업을 조정하고, 정확한 용어의 사용과
법령입안기준 등에 부합하도록 관련조문을 정비하는 것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현행 조례 제19조 제1항 제7호 사업을 삭제하는 것은 건설폐재
처리비용의 상승에 따라 중간처리업체와 수집·운반업체간
이해관계 상충 및 관급공사 비용 증가로 인한 시민부담 증가가
예상됨으로

사업의 공익성 논리개발을 통해 유권해석의 재심의 요구 등
본 사업의 지속추진을 위한 노력이 선행된 후에 관련조문을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됨.